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바텍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바텍"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KHVATEC Co., Ltd.라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보통신기기용 부품과 제품 제조 및 판매
2.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 컴퓨터주변기기 부품과 제품 제조 및 판매
3. 조명장치 관련 부품과 제품 제조 및 판매
4. 각종 금형의 제조 및 판매
5. 모타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6. 국내외 무역
7. 부동산 임대업
8. 전자상거래 및 관련유통업
9. 문화사업 및 관련사업
10. 브랜드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 업
11. 시장조사 및 경영자문 등의 컨설팅 업
12. 서적출판, 인쇄 및 판매업
13.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14. 기타 생활용품 및 잡화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허용되는 사업
15.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및 투자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 ① 회사의 본점은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다.
-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hvatec.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다만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 주로 한다.

제 6 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 주(1 주의 금액 5,000 원 기준)로 한다.

제 7 조(1 주의 금액) 주식 1 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제 8 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삭제>

제 8 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 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9 조의 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 5 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제 9 조의 3, 제 9 조의 4 에 의해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수와 합하여 5,000,000 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은 제 2 항에 의한 배당을 받고, 잔여 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⑤ 종류주식이 제 2 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도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되지 아니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

⑦ 종류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의 3(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 5 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제 9 조의 2, 제 9 조의 4 에 의해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수와 합하여 5,000,000 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3 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3 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3 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
-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 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⑨ 상환가액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20 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 9 조의 4(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 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 5 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제 9 조의 2, 제 9 조의 3 에 의해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수와 합하여 5,000,000 주로 한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3 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3 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3 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
- ⑦ 전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0 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⑧ 제 7 항 또는 제 8 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 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 주로 한다.
- ⑨ 제 7 항 또는 제 8 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 조를 준용한다.

제 10 조(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4.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와 신기술사업금융 및 창업투자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법인에게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 및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기관투자자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한다.

제 11 조(일반공모증자등)

①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 6 에 따라 이사회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 10 조 제 2 항 제 4 호, 내지 제 8 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 1 항과 제 2 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 12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시행령 제 30 조의 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상법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 340 조의 2 ④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시가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 1 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 1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15 조(명의개서)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제 1 항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는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 17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② 회사가 제 1 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 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 1 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8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배정, 발행하는 경우와 신기술사업금융 및 창업투자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법인에게 배정, 발행하는 경우
4.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4.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기관투자자 및 개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5.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3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1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 18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3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1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삭제)

제 21 조(교환사채의 발행) (삭제)

제 22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5 조(명의개서) 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23 조(소집시기)

①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 24 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 39 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회사가 정한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제 542 조의 4 제 3 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서울사무소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7 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8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9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30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31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2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단, 적대적 인수 합병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4 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② 1 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출석한 주주의 4 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제 34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 1 절 이 사

제 35 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으로 한다.

제 36 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제 35 조(이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지 아니하다.

③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8 조(자격주) (삭제)

제 39 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0 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사용인을 겸한 이사의 사용인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④ 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기업인수 합병 등으로 인하여 해임될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금으로 대표이사에게 100 억, 이사 및 감사에게 각 50 억을 지급한다.

⑤ 제 4 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 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발생한다.

제 41 조의 2(이사의 책임감경)

①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42 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3 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4 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5 조(위원회) (삭제)

제 46 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 절 대 표 이 사

제 47 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제 48 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장 감 사

제 49 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제 50 조(감사의 선임, 해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임 한다
-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 3 항 제 4 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51 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 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49 조(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2 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 40 조 제 3 항 및 제 41 조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 6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3 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4 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 4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 55 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56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 및 447 조의 2 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 447 조의 2 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7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58 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9 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 17 조 제 1 항에 따라 정한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과 다른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60 조(중간배당) (삭제)

부 칙

이 정관은 2004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제 8 조의 2, 제 15 조 제 16 조 및 제 22 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바텍